

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148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뜯섬유수지 내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유권 일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뜯섬유수지 내에 있는 구유지와 교환하기 위해 제안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취득구분: 토지 교환(취득·처분)
- 나. 사업기간: 2020. 6. ~ 2020. 9.
- 다. 위 치: 성동구 성수동1가 685-63 등 5필지 중 일부
(685-63 일부, 676-1 일부, 669-1 일부, 671-39, 671-60)
- 라. 교환재산: <취득> 토지 9,339㎡
<처분> 토지 9,339㎡
- 마. 소요예산: 비예산(공시지가가 동일하여 동일면적 교환)
- 바. 기준가격
 - 1) 취득 토지: 7,657,980천 원(개별공시지가)
 - 2) 처분 토지: 7,657,980천 원(개별공시지가)
- 사. 교환시기: 2020년 9월(예정)
- 아. 계약방법: 상호협약에 의한 계약
 - ※ 처분 및 취득 재산목록: 별첨참조

3.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

가. 일반회계

- 1) 취득 1건: 토지 4필지 9,339m² - 교환
 - 성수동1가 676-1 일부, 669-1 일부, 671-39, 671-60
- 2) 처분 1건: 토지 1필지 9,339m² - 교환
 - 성수동1가 685-63 일부

4. 관련법규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다.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- 라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9조(처분 등의 제한) 제1항 제2호

공유재산 관리계획

2020년도 (수시)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㎡, 천원)

구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건수	수량 (면적)	금 액	건수	수량 (면적)	금 액	건수	수량 (면적)	금 액	
취 득	계				1	9,339	7,657,980	1	9,339	7,657,980	
	1. 매 입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			1	9,339	7,657,980	1	9,339	7,657,980	
	3. 그 밖의 취득										
처 분	계				1	9,339	7,657,980	1	9,339	7,657,980	
	4. 매 각										
	5. 양 여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			1	9,339	7,657,980	1	9,339	7,657,980	

202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	교환대상 수 량	추정가액	교환 시기	교환 사유	교 환 대상자	비고	
	구 분	지목	소 재 지	일단의 수 량							
1 건	처 분	유지	성수동1가 685-63	24,385	9,339	7,657,980	2020.9	뚝섬유수지 내 복합문화 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	서울시		
	취 득	유지	성수동1가 676-1	20,300	4,477	3,671,140	2020.9				
		유지	성수동1가 669-1	5,821	4,154	3,406,280	2020.9				
		유지	성수동1가 671-39	582	582	477,240	2020.9				
		유지	성수동1가 671-60	126	126	103,320	2020.9				
계	토 지	처 분	유지	성수동1가 685-63	24,385	9,339	7,657,980	2020.9	뚝섬유수지 내 복합문화 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	서울시	
		취 득	유지	성수동1가 676-1	20,300	4,477	3,671,140	2020.9			
			유지	성수동1가 669-1	5,821	4,154	3,406,280	2020.9			
			유지	성수동1가 671-39	582	582	477,240	2020.9			
			유지	성수동1가 671-60	126	126	103,320	2020.9			
	건 물	처 분	취 득								
		기 타	처 분	취 득							
			취 득								

주) 1. 구분: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.

2. 교환대상수량: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,000m²이고, 교환대상토지가 2,000m²이면 “일단의 수량”란에는 5,000, “교환대상수량”란에는 2,000을 기재한다.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.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(뚝섬유수지 내 구유지 · 시유지 토지 교환)

재산	소재지	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-63, 676-1, 669-1, 671-39, 671-60				
내역	소유자	성동구, 서울시	면적	토지 9,339㎡	지목	유지

